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89
----------	-------

발의연월일 : 2026. 8. 28.

발 의 자 : 황운하 · 장종태 · 이강일
용혜인 · 서왕진 · 정춘생
김준형 · 차규근 · 강경숙
신장식 · 김선민 · 백선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발제한구역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데, 불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행정대집행은 국토부 훈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도록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제30조제2항 신설).

또한 현행법은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규정에서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는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취락지구는 제37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음.

이에 국민의 법률 생활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해당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37조제1항제8호에”를 “제37조제1항제6호에”로 한다.

제3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①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주단지를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5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① ----- ----- ----- ----- -----제37조제1항제6호에-----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생략) <u><신 설></u> ② ~ ⑦ (생략)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 ⑧ (현행 제2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